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 9. 2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9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7년 9월 25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총예산	자체수입	출연금	비고
2013	6,036,306	4,575,632	1,460,674	
2014	6,528,543	4,490,571	2,037,972	
2015	6,922,163	4,711,386	2,210,777	
2016	8,105,647	5,016,647	3,089,000	
2017	8,858,720	4,744,520	4,114,200	

※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18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마포문화재단 출연금의 예산편성 전 마포구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마포문화재단은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고 수익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여 2017년 기관 경영평가 결과 S등급을 획득하였음

또한 마포아트센터의 각종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위탁수업 방식을 개발하여 활성화 시키는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2018년도에도 마포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